

의안번호	제816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5년 1월 1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1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년 1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인 「하천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의 개선 및 보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맞춰 점용료 분할납부 횟수 등 조정(안 제5조제3항)
 - 하천수사용료 징수 기준 표기
 - 6개월씩 균할납부(연 2회) →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
- 하천수사용료에 대한 근거 조항 수정(안 제2조제2항, 안 제5조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불임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57조제1항”을 “제57조제1항부터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따른다”를 “따르며, 하천수사용료의 징수는 영 제57조제4항을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등이”를 “등 및 하천수사용료가”로,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”을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”으로, “6개월씩 균할납부하게”를 “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최초의 점용료는”을 “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”으로, “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”를 “연도 분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① (생략) ② 하천수사용료는 「하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③ (생략)	제2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----- 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(생략) 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 제42조제2항을 따른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	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따르며, 하천수사용료의 징수는 영 제57조제4항을 따른다. ③ ----- 등 및 하천수사용료가 ----- ----- ----- -----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 ----- -----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----- ----- . -----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-----

1월과 7월에 납부한다.

④ ~ ⑥ (생략)

-- 연도 분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하천법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"하천관리청"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·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를 말한다.
8. "하천수"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.

제37조(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)

-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 사용료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사유(私有)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·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.
-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 1. 공용·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 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 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제50조(하천수의 사용허가 등)

- ⑦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「지하수법」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□ 하천법 시행령

제42조(점용료등의 징수)

-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(이하 “점용료등”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7조(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)

-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(이하 “하천수사용료”라 한다)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

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.

④ 시·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. 다만,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(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)에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국유재산법 시행령

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

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”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.

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(이하 “고시이자율”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하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「충청북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○ 작성자

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